

2026년도 제2회 군산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공고

군산우체국에서 우편물 집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 30.
군산우체국장

1. 채용 직종 및 인원

채용직종	인원	응시권역 (근무예정우체국)	담당업무	비고
상시계약집배원	1명	군산대야우체국	○ 통상 및 소포배달업무 ○ 기타 부대업무	

2. 근무 조건

- 신분 : 공무원 근로자(비공무원)
 - * 공무원 근로자의 경우, **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**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- 보수 : 기본급+수당
 - 기본급 : 월급 2,016,880원
 - 수당 : 가족수당, 운전수당, 근속수당, 명절수당, 정액급식비 등
 - 실적수당 : 연장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, 상시출장여비 등
 - 기타 : 사회보험(산재보험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) 가입, 맞춤형복지제도,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
-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8:00~17:00)
 - **주 5일(월~금)을 기본근무로 하나 국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은 변경될 수 있음**

- 휴게시간 :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,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
 - * 출근,퇴근시간은 우편물 배부 시간을 감안하여 변동 가능
 - *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

- 휴가 : 연차유급휴가, 공무유급휴가, 특별유급휴가 등
- 업무 특성 :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, 일평균 340여통 이상(최번기 380여통 이상) 통상우편물과 2kg 내외(최고 30kg)의 다량의 소포를 직접 운전·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

3. 응시 자격(*최종(면접)시험일 예정일 기준)

가. 응시연령 :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, 60세 미만인 자

『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』 제62조(근무상한 연령)

- 공무원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.
-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까지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.

나. 자격증 : 「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」와 함께 「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」를 동시에 소지(최종시험일 현재)하고 **수동차량 운전 가능하고 자동이륜차 운전도 가능한 자** (참고 :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조건 : J (다륜형)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는 한정면허임)
(**실기시험 응시 전까지 자격증이 없으면 실기시험 응시 불가**)

다. 지역제한 : 공고일(2026.6.30.) 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.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

마. 응시자격 제한

-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

○ 결격사유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※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

4. 우대요건(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)

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
- 나.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
 - 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정보처리기능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

기술자격(ITQ), 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인터넷정보관리사(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) 중 1개 이상 소지자
 ※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‘가’ 항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며 ‘정보화자격증’과 ‘취업지원대상자’ 등의 심사항목에 2개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1개의 자격만을 반영함.

다. 근무경력

- 집배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- 우체국소포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- 재택 · 통상 · 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- ※ 경력증명서 제출자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4대보험(고용보험 등)중 1개의 자격득실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
- ※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
- ※ **증빙자료가 없는 경력,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**

5. 시험 방법

시험단계 채용분야	제1차 시험	제2차 시험	제3차 시험
상시계약집배원	서류전형	실기	면접시험

가. 제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요건,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·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
-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각 모집구분(응시권역) 인원의 **5배수 초과일 경우**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**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**(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)
 - 서류전형 심사기준

배점	심사항목	자격요건 만족도	직무관련 경력	무사고 경력	자기소개 충실성실성	정보화 자격증	취업지원 대상자 등
100점		15점	30점	30점	10점	10점	5점

나. 제2차 시험 : 실기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
 - 체력 검정(3종목) : 윗몸 일으키기, 팔굽혀 펴기, 소포상자이동하기

- 검정기준표 : 붙임참조
- **체력 검정 면제 : 「국민체력 100」 인증서*(3등급 이상) 제출자**
 - *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(무료로) **인증일이 실기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인 인증서(3등급이상)에 한함**

다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
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* 평가요소 :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과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
 - * 실기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- (최종합격자 결정)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(‘상’, ‘중’, ‘하’의 개수)을 집계하여 ‘중’, ‘하’의 개수와 상관없이 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‘상’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
 - *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(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)
- (불합격 기준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- 면접 시험 대상자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지참한 후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면접 대기 장소에 입장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* 응시표는 면접 당일 대기 장소에서 배부
- 면접이 시작된 이후에는 면접 대기장 입실 불가 및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니, 반드시 면접 시험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6. 응시서류 접수

- 가. 원서접수 :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
- 나. 접수기간 : 2026. 7. 3.(금) ~ 2026. 7. 7.(화) 18:00까지

다. 접수방법

-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

- * 온라인 접수시 문의사항은 고용24 콜센터(1577-7114,1544-4430)문의
- * 최종 접수 여부반드시 확인,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라. 구비서류 첨부 : 온라인 접수시 PDF·JPG 파일(성명_서류명) 첨부

또는 등기우편 제출(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)

- 접수처 : (54025) 전북 군산시 우체통거리1길 20
군산우체국 지원과 인사 담당자
- 우편제출 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(익일특급 등기우편)까지 인정
-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**응시원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하여야함**
- * 구비서류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『**상시계약직배원 응시원서 구비서류 재중**』 표시
- * **응시표는 실기·면접시험 당일날 교부(※응시번호는 SMS문자로 송부 또는 유선 안내)**

마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수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제출된 증빙서류(경력,자격등)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또는 위·변조시 『국가공무원법』 및 『공무원 임용시험령』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7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

- 가. 모집공고 : 2026. 6. 30.(화) ~ 7. 7.(화)
- 나. 응시원서 접수기간 : 2026. 7. 3.(금) ~ 2026. 7. 7.(화) 18:00까지
- 다.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: 2026. 7. 10.(금) / 7. 10.(금)
- 라. 실기 및 면접시험 : 2026. 7. 20.(월)
- 마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 7. 22.(수)
- 바.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 일정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,

8.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 1부
- 나. 이력서 1부
- 다. 자기소개서 1부
- 라. 운전경력증명서 1부
 - 면허발급 이후 **전체기간**의 운전면허경력, 범규위반,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 하며, 운전면허경력란에 **면허취득일자**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제출
- 마. 주민등록초본 1부 (**최종합격자만 제출※ 병역사항이 기재되게 발급**)
 -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**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**하여 발급
 - 초본교부 신청시, 신청내용을 『**전체포함**』으로 선택하여 발급
- 바.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, 발급확인자의 서명(날인) 및 연락처 포함
- 사.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아.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자. 「**국민체력 100**」 인증서(3등급 이상)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*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(무료)로 **인증일이 실시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인 인증서(3등급이상)에 한함**
- 차. 운전면허증 사본
- 카.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
 - ※ **운전면허 경력증명서(1부) 및 주민등록 초본(1부)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**
누락(미비사항)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- ※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,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9. 기타사항

- 가.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
- 나.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,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(결격사유)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
- 다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
 -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산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
 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군산우체국 이메일(tax56001820@korea.kr)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통하여 발송
 -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.7.22.(최종합격자 발표일)~2026.8.5.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
- 라.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,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,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.
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,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 가능
- 마. 상시계약집배원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
- 바.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할

수 있음. 단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

- 사.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
- 아.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공지
- 자. 면접시험은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【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 면접 시행계획】에 공고예정
- 차.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, 선발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(선발인원의 3배수 내)중에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카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우체국 지원과(063-440-62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본 공고문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(<http://koreapost.go.kr/573>)
집배원 채용안내 홈페이지(postman.koreapost.go.kr), 고용24(www.work24.go.kr)
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